
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즉시	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
	③ 대표자 성명			④ 생년월일			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		(전화번호 :)			
② 과세연도	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			
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(= ⑩+⑬)							
가.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							
⑥ 영상콘텐츠 구분 (㉠,㉡,㉢)	⑦ 영상콘텐츠 명칭	⑧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	⑨ 세액공제 대상여부	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	⑪ 국가 보조금 등	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	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(⑩-⑪-⑫)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계							
나. 기본공제금액 (=⑭)							
기업 구분	⑭ '23.12.31 이전 발생분	⑮ 공제율	⑯ '23.12.31 이전 기본공제금액 (= ⑭×⑮)	⑰ '24.1.1 이후 발생분	⑱ 공제율	⑲ '24.1.1 이후 기본공제금액 (= ⑰×⑱)	⑳ 기본공제금액 (= ⑯+⑲)
중소기업		10%			15%		
중견기업		7%			10%		
일반기업		3%			5%		
다. 추가공제금액 (=㉑)							
기업 구분	㉑ 세액공제 대상금액		㉒ 공제율		㉓ 추가공제금액 (= ㉑×㉒)		
중소기업			15%				
중견기업			10%				
일반기업			10%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"㉔ 영상콘텐츠 구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㉔ 방송, ㉕ 영화, ㉖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"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.
 2. "㉕ 영상콘텐츠 명칭"란: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.
 3. "㉖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"란: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.
 4. "㉗ 세액공제 대상여부"란: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"여"에 표시하며, ㉔ 방송 또는 ㉖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"여"에 표시합니다.
 - 1)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
 - 2)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
 5. "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,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.
 - 1) 광고 및 홍보비용, 기업업무추진비
 - 2) 「소득세법」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29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
 - 3)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[위 1), 2)의 금액은 제외합니다]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
 6. "㉙ 국가 보조금 등"란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.
 7. "㉚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(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)이 있으면 적습니다.
 8. ㉛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기본공제 대상금액 합계(㉜+㉝)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 9. "㉞ 세액공제 대상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'24.1.1.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㉛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4항제1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4항제2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
- 나.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
- 1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
 - 2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
 - 3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
 - 4)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복제권, 공연권, 방송권, 전송권,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.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.

과 세 연 도	영 상 콘 텐 츠 제 작 비 용 에 대 한 세 액 공 제 추 가 공 제 요 건 명 세 서	상 호 또 는 법 인 명	
		사 업 자 등 록 번 호	

① 촬영제작 비용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1호 관련)

(단위: 원, %)

① 영상콘텐츠 명칭	② 과세연도별 촬영제작 비용	③ 국내에서 지출한 촬영제작 비용	④ 비율 (=③/②)

②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

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 관련)

(단위: 원, %)

① 영상콘텐츠 명칭	⑤ 과세연도별 작가·주요 스태프 인건비	⑥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	⑦ 비율 (=⑥/⑤)

③ 배우 출연료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 관련)

(단위: 원, %)

① 영상콘텐츠 명칭	⑧ 과세연도별 배우 출연료	⑨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	⑩ 비율 (=⑨/⑧)

④ 후반제작 비용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 관련)

(단위: 원, %)

① 영상콘텐츠 명칭	⑪ 과세연도별 후반제작 비용	⑫ 국내에서 지출한 후반제작 비용	⑬ 비율 (=⑫/⑪)

⑤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권리 보유 여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관련)

① 영상콘텐츠 명칭	⑭ 권리 보유 여부						⑮ 보유권리 수
	복제권	공연권	방송권	전송권	배포권	2차적저작물작성권	
	여, 부	여, 부	여, 부	여, 부	여, 부	여, 부	
	여, 부	여, 부	여, 부	여, 부	여, 부	여, 부	

첨부서류	- 촬영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 -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와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 - 배우 출연료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출연료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합니다) - 후반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9 제3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 -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를 등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"① 촬영제작 비용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에 든 비용,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및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②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"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,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③ 배우 출연료"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,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 및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④ 후반제작 비용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에 든 비용,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및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⑤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권리 보유 여부"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복제권, 공연권, 방송권, 전송권,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경우 "여"에 표시합니다.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.